

1. 개정이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어 명확화(안 제4조 및 제5조)

현재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변경 등을 할 경우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 규칙에 ‘영향조사’로 되어 있어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명확히 함
나.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빛공해 검사기관의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신청과 지정 절차, 변경신고의 절차와 그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함

다. 빛공해 검사 업무의 절차 및 방법(안 제11조의3)

검사 신청, 빛공해 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절차와 방법 및 그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함

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지정 취소 혹은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빗공해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빗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빗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빗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의 기관명·대표자·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2.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대표자

3. 기술인력 및 장비

⑥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원장은 변경신고를 한 자가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⑧ 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된 사항이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세부 인정기준·절차는 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의3(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① 빛공해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1호에 따른 빛공해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며, 그 결과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빛공해 검사기관의 검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빛

공해 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게 제출한다.

2. 제1호에 따라 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빗공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린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4(빗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의5(빗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원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빗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 취소일 또는 업무 정지일 및 업무 정지기간
2. 지정번호
3.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대표자
4. 사무실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5.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

②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빗공해 검사기관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조 관련)

1. 장비기준

장비	수량
가. 빛공해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빛공해를 측정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	
1) 조도계	1대 이상
2) 점휘도계	1대 이상
3) 면휘도계	1대 이상
4) 삼각대	1개 이상
5) 분석컴퓨터	1대 이상
나. 측정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 이상

2. 기술인력기준

자격요건	인력
가. 빛공해 관련 분야(빛환경, 환경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물리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 학위 취득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빛공해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위 취득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	

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3. 시설

검사 기술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정한 넓이의 사무실과 검사대상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분석·검사용 장비의 관리 등을 위하여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4. 검사업무 규정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업무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가. 검사업무의 절차 및 방법

나. 검사업무의 사후관리 방법

다. 검사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검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 요령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1조의4 관련)

1. 빛공해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1호에 따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분야 공정시험기준 및 그 서식에 따라 빛공해 검사를 신청받은 항목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포함해 작성하되, 작성된 자료는 검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가.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방법(ES 11300.1)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자료 평가표 및 조명환경 배치도
 - 나. 장식조명 발광표면 휘도 측정: 장식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방법(ES 11301.1)의 장식조명 발광표면 휘도 측정자료 평가표 및 조명환경 배치도
 - 다. 점멸·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을 제외한 일반 광고조명 발광표면 휘도 측정: 일반 광고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방법(ES 11302.1)의 광고조명 발광표면 휘도 측정자료 평가표 및 조명환경 배치도
 - 라. 점멸·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 점멸·동영상 전광류 광고물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방법(ES 11302.2)의 점멸·동영상 전광류 광고물 발광표면 휘도 측정자료 평가표 및 조명환경 배치도
2. 빛공해 검사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측정항목, 측정자, 측정일시, 대상 조명 소재지, 조명기구, 관리주체, 측정자료 분석결과,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 검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확인실적을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조명기구가 위치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확인실적은 해당 연도말까지의 확인결과를 통보한 것을 의미한다.
3. 빛공해 검사기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해야 한다.
4. 빛공해 검사기관은 측정기기를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5. 빛공해 검사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 검사 신청인이 조명기구의 소유자나 점유자·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검사에 대한 승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빛공해 검사기관은 휴업, 업무정지, 측정능력 초과, 제5호에 따른 소유자등의 검사 거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검사 의뢰를 거부하거나 제11조의3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검사 결과 자료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5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빚공해 검사기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법 제16조의3 제1항제3호	지정취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 명의를 사용하여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 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4호	지정취소			
마. 법 제16조의2제2항 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 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2) 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3) 갖추어야 할 장비 가 부족한 경우 4) 갖추어야 할 장비 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5호	경고 지정취소 경고 지정취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바. 법 제16조의2제3항 에 따른 절차·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사. 법 제16조의2제4항 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 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1)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7호	경고 지정취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고시로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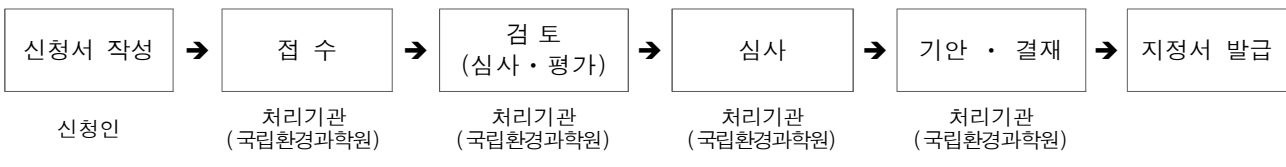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제 호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주 소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변경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 일
신고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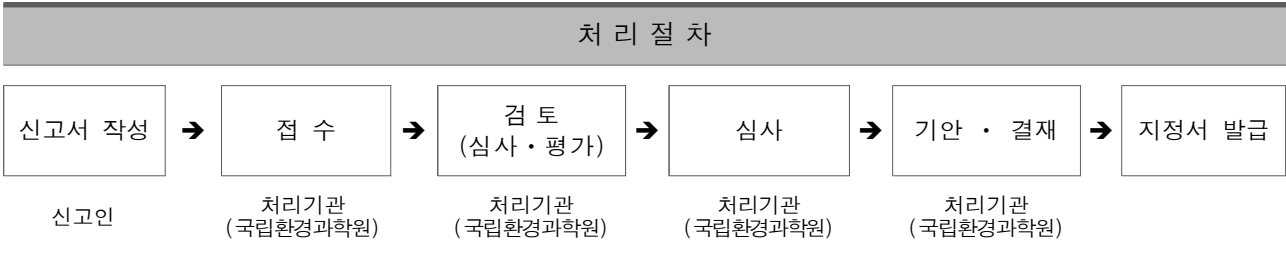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내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검사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 음
------	---	------------



빛공해 검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기관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		

검 사 신 청 내 용

조명기구 설치장소	
조명기구 종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명기구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 (점멸 또는 동영상에 있는 전광류 광고물 [] 포함 [] 불포함)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조명기구
조명기구 수량, 용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빛공해 검사기관장 귀하

제출서류	해당없음
------	------

유의사항

빛공해 검사기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한 기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검사기관)	→	현지확인 및 조사	→	분석	→	결과 통지
신청인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신청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견수렴)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명환경 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시장 ·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 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 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보내야 한다.	제4조(의견수렴) ①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정대상 지역의 주민과 환 경에 대한 영향조사 결과	4. ----- 법 제16조 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변경)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 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 나 변경할 때에는 <u>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u> 를 실시하 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 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지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변경) ① ----- ----- ----- ----- 법 제16조 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 ----- -----

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③ (생략)

제7조의2(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시·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반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① -----

-- 별표 1과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
--- 법 제12조제4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빛공해 검사

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빗공해 검사
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빗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
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
다.

1. 검사기관의 기관명·대표자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의 소재
지

2.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대표
자

3. 기술인력 및 장비

⑥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신 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원장은 변경신고를 한 자가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⑧ 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된 사항이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세부 인정기준 · 절차는 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의3(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① 빛공해 검사기

<신 설>

<신 설>

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1호에 따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며, 그 결과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빛공해 검사기관의 검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빛공해 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게 제출한다.

2. 제1호에 따라 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빛공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린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4(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의5(빛공해 검사기관의 지

정 취소 등) ① 원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빗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 취소일 또는 업무 정지일 및 업무 정지기간

2. 지정번호

3.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대표자

4. 사무실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5.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

②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빗공해 검사기관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